



#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안내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거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에각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인권교육 대상자들이 반드시 연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집합·인터넷교육 모두 동일함(종전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에서 변경)

붙임: 2024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업안내(배포용) 1부. 끝.

##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권교육기획과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권교육운영과장),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 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 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 울산광역시장(보훈노인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 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노인복지과장), 충청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 충청남도지사(경로보훈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노인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어르신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노인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복지과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주무관 이현지 사회복지사무관 박종한 노인정책과장 전결 2024. 3. 25. 최봉근

협조자

시행 노인정책과-1467 (2024. 3. 25.)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453 팩스번호 044-202-3969 / [gracehj07@korea.kr](mailto:gracehj07@korea.kr) / 비공개(5)